

<적용시기> 2025.1.1.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(2)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

(소득세법 제59조의2)

<개정취지> 출산·양육부담 완화

종 전	개 정
☐ 자녀세액공제 ○ (공제대상자녀) 기본공제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 ○ (공제금액) - (첫째) 15만원 - (둘째) 20만원 - (셋째 이후) 30만원/인	☐ 공제금액 확대 ○ (좌 동) ○ (좌 동) - 25만원 - 30만원 - 40만원/인

<적용시기> 2025.1.1.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(3)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등

(소득세법 제150조 제3항, 제16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21조 제1항)

<개정취지> 납세조합 세액공제 및 교부금 지원 수준 합리화

종 전	개 정
□ 납세조합* 원천징수 제도 * 세원포착이 어려운 업종의 납세자 등이 스스로 조합을 결성하여 원천징수·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○ (징수·납부) 납세조합 조합원*의 소득세를 매월 징수·납부(다음 달 10일까지) * (근로자) 국외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근로 소득이 있는 자 (사업자) 농축수산물 판매업자(복식부기 의무자 제외), 노점상인 ○ (조합 교부금) 매월 징수·납부한 소득세액의 2~10%* * 조합원 1인당 30만원 한도 ※ (국세청 고시) 소득세액의 2% ○ (조합원 세액공제) 매월 소득세액의 5%* * 조합원 1인당 100만원/연 한도 — (적용기한) 2024.12.31.	□ 세액공제·교부금 합리화 ○ (좌 동) ○ (근로자) 교부금 하한 축소* (소득세액의 2~10% → 1~10%) * 조합원 1인당 30만원 한도 유지 (사업자) 교부금 폐지 ○ 근로자 공제율 축소: 소득세액의 5%→3% * 조합원 1인당 100만원/연 한도 유지 — (근로자) 2027.12.31. (사업자) 적용기한 종료

<적용시기>

- (사업자 교부금 폐지·근로자 세액공제율 축소) 2025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(근로자 교부금 하한 축소) 2025.2.28. 후 교부금 청구분부터 적용

(4)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

(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)

<개정취지> 해외근무 근로자 지원

종 전	개 정
☐ 재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 * 재외근무수당 75%, 재외가족수당·학자금 등 전액 비과세 ○ 공무원, 재외공관 행정직원, 재외한국문화원·문화홍보관 행정직원 ○ 코트라, 코이카, 한국관광공사,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, 산업인력공단 <추 가>	☐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[○ (좌 동) - 중소기업진흥공단

<적용시기> 2025.2.28.이 속하는 과세기간 소득분부터 적용

(5) 종교인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

(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2호)

<개정취지>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범위 합리화

종 전	개 정
☐ 종교인소득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○ (적용대상) 종교관련 종사자가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차량 - 종교관련 종사자가 소유 <추 가> ○ (한도) 월 20만원 이내	☐ 적용대상 차량 범위 확대 ○ (좌 동) - (좌 동) - 종교관련 종사자가 본인 명의로 임차 ○ (좌 동)

<적용시기> 2025.2.28.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

(6)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 확대

(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)

<개정취지> 부동산 연금화 유도를 위한 노후생활 안정 지원

종 전	개 정												
□ 연금계좌 납입한도 ○ 연금저축 + 퇴직연금 : 연간 1,800만원 ○ 추가납입 가능 항목 ①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② 1주택 고령가구* 주택(기준시가 12억원 이하) 다운사이징 차액 * 부부 중 1명 60세 이상 <추 가>	□ 연금계좌 추가납입 항목 추가 ○ (좌 동) ③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<th>내 용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대상자</td><td> ▶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① 부부합산 1주택 이하자 ② 기초연금수급자 </td></tr> <tr> <td>대상 부동산</td><td>10년 이상 장기보유한 부동산 (주택·토지·건물)</td></tr> <tr> <td>납입한도</td><td>Min(대상부동산 양도차익, 1억원)</td></tr> <tr> <td>납입기간</td><td>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 납입</td></tr> <tr> <td>사후관리</td><td>납입당시 요건 미충족 확인시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음</td></tr> </tbody> </table> ※ ②·③ 합산 납입한도 : 생애누적 최대 1억원	구 분	내 용	대상자	▶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① 부부합산 1주택 이하자 ② 기초연금수급자	대상 부동산	10년 이상 장기보유한 부동산 (주택·토지·건물)	납입한도	Min(대상부동산 양도차익, 1억원)	납입기간	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 납입	사후관리	납입당시 요건 미충족 확인시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음
구 분	내 용												
대상자	▶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① 부부합산 1주택 이하자 ② 기초연금수급자												
대상 부동산	10년 이상 장기보유한 부동산 (주택·토지·건물)												
납입한도	Min(대상부동산 양도차익, 1억원)												
납입기간	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 납입												
사후관리	납입당시 요건 미충족 확인시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음												

<적용시기> 2025.2.28.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여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

(7) 퇴직자 노조회비 세액공제 적용기준 완화

(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)

<개정취지> 퇴직자에 대한 노조회비 세액공제 적용 합리화

종 전	개 정
☐ 기부금 세액공제*를 적용받는 일반기부금의 범위 * 공제율: 15%(1천만원 초과분은 30%) ☐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 ☐ 아래의 노동조합*(㉠+㉡)이 「노동조합법 시행령」이 정하는 공시시스템에 직전 회계 연도의 결산결과가 공표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* 「노동조합법」, 「교원노조법」, 「공무원노조법」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<추 가> ㉠ 조합비를 직접 납부받은 노동조합 (조합원 수 1,000명 이상으로 한정) ㉡ 규약 등에 따라 ㉠가 납부받은 회비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받은 노동조합 (단위노동조합, 산하조직, 연합단체) ☐ 교원단체,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	☐ 퇴직자 노조회비에 대한 적용요건 완화 ☐ (좌 동) ☐ (좌 동) － 이전 연도 결산결과 공표 전 퇴직자의 경우 전전 연도의 결산결과가 공표된 경우 포함 ☐ (좌 동)

<적용시기> 2025.2.28.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

(8)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 명확화 및 증빙인정 범위 확대

(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·제2항)

<개정취지> 납세자 편의 제고

종 전	개 정
□ 장애인의 범위 ❶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및 「장애아동 복지 지원법」에 따른 장애아동 ❷ 「국가유공자법」에 따른 상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람 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□ 장애인 추가공제 적용을 위한 증빙 인정 서류 ○ 장애인증명서 <추 가>	□ 장애인 범위 명확화 ○ (좌 동) ❸ 중증질환,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·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자로서 의료기관의 장기 취업·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하는 자 □ 장애인에 대한 증빙 인정 서류 범위 확대 ○ (좌 동) ○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* *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§21에 따른 발달재활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6세 미만 장애아동에 한함

<적용시기> 2025.2.28.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

※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 개정으로 당초 6세 미만 → 9세 미만으로 변경

(9)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요건 합리화

(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)

<개정취지> 금융서비스 확대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합리화

종 전	개 정
□ 대출기관을 통한 주택임차 차입금 소득공제 ○ (공제대상) 무주택자 ○ (공제율)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의 40% ○ (공제한도) 연 400만원 ○ (임차주택) 국민주택규모(84㎡) 이하 규모의 주택(오피스텔 포함) ○ (공제요건) ❶·❷·❸ 모두 충족 ❶ 은행, 상호저축은행, 보험회사 및 주택금융공사등*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일 것 * 농협, 수협, 신협, 새마을금고, 우체국, 주택도시기금, 여신전문 금융회사, 지방보훈청 ❷ 입주일·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<추 가> ❸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<추 가>	□ 대환대출 시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적용 ○ (좌 동) — 대출기관을 통한 대환대출의 차입일은 대환 전 차입금의 차입일로 봄 ❸ (좌 동) — 대환대출의 경우 예외 인정* * 대환대출의 경우 대출기관간 정산되므로 임대인 계좌에 입금 절차 불필요

<적용시기> 2025.1.1. 이전 대환대출한 차입분도 적용

(10)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범위 명확화

(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)

<개정취지> 소득공제 요건 명확화를 통한 납세자 혼란 방지

중 전	개 정										
□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○ (공제한도) 600~2,000만원 <table><tr><td colspan="2">상환기간 15년 이상</td><td rowspan="2">상환기간 10년 이상</td></tr><tr><td>고정금리 ○</td><td>고정금리 ×</td></tr><tr><td>2,000만원</td><td>1,800만원</td><td>600만원</td></tr></table> ○ (거치기간) 없음 ○ (공제요건) 상환기간*동안 매년 일정금액 이상의 차입금 상환 － 매년 상환금액 : <table><tr><td>$\frac{\text{차입금의 70\%}}{\text{상환기간 연수}}$</td></tr></table> *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	상환기간 15년 이상		상환기간 10년 이상	고정금리 ○	고정금리 ×	2,000만원	1,800만원	600만원	$\frac{\text{차입금의 70\%}}{\text{상환기간 연수}}$	□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명확화 ○ (좌 동) ○ 1년 이내 ○ 상환월수에 비례하여 매년 상환하는 금액 기준 명확화 － 매년 상환금액 : <table><tr><td>$\frac{\text{차입금의 100분의 70}}{\text{상환기간 연수}} \times \frac{\text{해당 과세기간의 차입금 상환월수}}{12}$</td></tr></table>	$\frac{\text{차입금의 100분의 70}}{\text{상환기간 연수}} \times \frac{\text{해당 과세기간의 차입금 상환월수}}{12}$
상환기간 15년 이상		상환기간 10년 이상									
고정금리 ○	고정금리 ×										
2,000만원	1,800만원	600만원									
$\frac{\text{차입금의 70\%}}{\text{상환기간 연수}}$											
$\frac{\text{차입금의 100분의 70}}{\text{상환기간 연수}} \times \frac{\text{해당 과세기간의 차입금 상환월수}}{12}$											

(11)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

(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, 제57조)

<개정취지>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

종 전	개 정
☐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기준 이자율 ☐ 연 3.5%	☐ 이자율 하향 ☐ 연 3.5% → 3.1% *「국세기본법 시행규칙」상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동일

<적용시기>

(주택임차자금 차입금) 2025.3.21.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

2.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

(1)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합리화

① 개인투자조합 출자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액 계산방법 명확화

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)

<개정취지> 벤처투자 소득공제 계산 명확화

종 전	개 정
☐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시 소득 공제*가 적용되는 투자액 계산식 * 3천만원 이하: 100% 3천만원~5천만원: 70% 5천만원 초과: 30% ○ $A \times B$ (A) 거주자의 개인투자조합 출자금액 (B) 해당 조합의 벤처기업등 투자 비율* *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금액 ÷ 개인투자조합 출자액 총액	☐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액 계산방법 명확화 ○ $A \times B - C$ (A) 거주자의 개인투자조합 출자금액 누적액 (B) 해당 조합의 벤처기업등 누적투자 비율* *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누적금액 ÷ 개인투자조합 출자액 총액 (C) 소득공제 기 적용된 투자액

(1)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합리화

② 개인투자조합 출자시 소득공제 추정 예외사유 확대

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)

<개정취지> 벤처투자 소득공제 계산 명확화

종 전	개 정
☐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추정 사유 ○ (원칙) 출자·투자일로부터 3년 이내 출자·투자지분 이전·회수 등 발생 ○ (예외) - 출자·투자자의 사망 - 세대 전원 해외이주 - 천재·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 발생 - 벤처투자조합 등* 해산 * 신기술사업투자조합, 전문투자조합, 「자본시장법」상 집합투자업자 <추 가>	☐ 소득공제 추정 예외사유 확대 ○ (좌 동) ○ 예외사유 추가 - (좌 동) - 최초 투자일로부터 1년 경과 및 투자한 모든 기업이 증권시장에 상장한 이후 개인투자조합 해산 - 최초 투자일로부터 1년 경과 및 투자한 기업이 증권시장에 상장한 이후 개인투자조합이 투자지분 이전·회수

<적용시기> 2025.2.28. 이후 해산 또는 투자지분 이전·회수하는 분부터 적용

(2)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

(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, 제16조의3, 제16조의4)

<개정취지> 우수인력의 벤처기업 유입을 촉진

현 행	개 정 안
☐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○ (적용기한) 2024.12.31.	☐ 적용기한 연장 ○ 2027.12.31.

(3) 해외 우수인재(K-tech Pass 보유자) 소득세 감면

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)

<개정취지> 우수 해외인재 확보 지원

종 전	개 정
□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○ (감면대상) ❶, ❷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❶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*에 의해 국내에 기술 제공하는 자 * 계약금액이 30만 달러 이상인 계약 ❷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- 자연계·이공계·의학계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- 국외 대학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경험이 있는 자 - 기업부설연구소,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거나 교수 체류 자격등이 있는 자 < 추 가 >	□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○ ❶, ❷, 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○ (좌 동) ❸ 「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」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

<적용시기> 2025.2.28. 이후 해외인재 인증 받은 분부터 적용

(4)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

(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)

<개정취지> 중소기업 성과공유 지원 및 제도 합리화

종 전	개 정
☐ 성과공유 중소기업*이 지급하는 경영 성과급**에 대한 세액공제 등 *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** 경영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사전 서면 약정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❶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·법인세 세액공제 － (공제율) 15% 공제 － (적용기한) 2024.12.31. ❷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*에 대한 소득세 감면 *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인 자, 최대주주 등 제외 － (감면대상소득) 성과공유제를 통한 경영 성과급 지급액 － (감면율) 소득세 50% 상당 세액감면 ○ (적용기한) 2024.12.31.	☐ 적용기한 연장 ○ 공제율 인하 및 적용기한 연장 － 15% → 10% － 2027.12.31. ○ 적용기한 연장 ○ (좌 동) ○ 2027.12.31.

<적용시기> 2025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

(5)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

(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 제1항)

<개정취지>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 및 자산형성 확대 지원

종 전	개 정
□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○ (감면대상)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·중견기업 근로자 ○ (감면요건) 성과보상기금에 5년 이상 가입한 중소·중견 기업 근로자 <신 설> ○ (감면율) - (청 년) 중소기업: 90% 중견기업: 50% - (그 외) 중소기업: 50% 중견기업: 30% ○ (감면대상소득)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 기여금 ○ (적용기한) 2024.12.31.까지 가입한 경우	□ 감면대상 범위 위임근거 마련, 감면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○ 성과보상기금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*에 가입한 중소·중견기업 근로자 * 내일채움공제,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 (고시에 위임) ○ 5년 이상 → 3년 이상 - (예외) 폐업·해산 등 기업의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도 감면 적용 ○ (좌 동) ○ 2027.12.31.까지 가입한 경우

<적용시기> 2025.1.1.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

(6)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 정비

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)

<개정취지> 감면 대상 업종 정비

종 전	개 정
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 (농어업등 23개 업종)	☐ 대상 업종 정비
○ 운수 및 창고업 <제 외>	○ (좌 동) - 「관세사법」 따른 통관업
○ 정보통신업(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) <제 외>	○ (좌 동) -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
○ 기타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<제 외>	○ (좌 동) - 수의업
○ 부동산업 <제 외>	○ (좌 동) - 부동산 임대업

<적용시기> 2025.2.28. 이후 취업하는 자부터 적용

(7)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및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공제율 상향

(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)

<개정취지>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활성화 및 특별재난지역 지원

종 전	개 정
☐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☐ (기부대상) 기부자의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 ☐ (세액공제율) - (10만원 이하) 기부금 $\times$ 110분의 100 - (10만원 초과) (기부금-10만원) $\times$ 15% ☐ (기부·공제한도) 500만원	☐ 공제적용 기부금 한도 상향 및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상향 [☐ (좌 동) - (10만원 초과) (기부금-10만원) $\times$ 15% (특별재난지역*의 경우 30%) *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(3개월) 내에 기부한 경우로 한정 ☐ 500만원 → 2,000만원

<적용시기> 2025.1.1. 이후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

(8)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

① 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및 대상기준 완화

(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)

<개정취지> 소기업·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

종 전	개 정																		
☐ 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부금(노란우산공제)에 대한 소득공제 ☐ (공제부금 납입한도) 분기별 300만원(연 1,200만원) ☐ (공제적용 소득) ❶ 또는 ❷ ❶ (개인사업자) 사업소득 ❷ (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) 근로소득 ☐ (소득공제 한도)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h>사업(근로)소득금액</th><th>공제 한도</th></tr> <tr> <td>4천만원 이하</td><td>500만원</td></tr> <tr> <td>4천만원~1억원</td><td>300만원</td></tr> <tr> <td>1억원 초과</td><td>200만원</td></tr> </table>	사업(근로)소득금액	공제 한도	4천만원 이하	500만원	4천만원~1억원	300만원	1억원 초과	200만원	☐ 적용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 ☐ (좌 동) ☐ 법인대표자 적용기준 완화 ❶ (좌 동) ❷ 총급여 7천만원→8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 ☐ 소득공제 한도 상향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h>사업(근로)소득금액</th><th>공제 한도</th></tr> <tr> <td>4천만원 이하</td><td>600만원</td></tr> <tr> <td>4천만원~6천만원</td><td>500만원</td></tr> <tr> <td>6천만원~1억원</td><td>400만원</td></tr> <tr> <td>1억원 초과</td><td>200만원</td></tr> </table>	사업(근로)소득금액	공제 한도	4천만원 이하	600만원	4천만원~6천만원	500만원	6천만원~1억원	400만원	1억원 초과	200만원
사업(근로)소득금액	공제 한도																		
4천만원 이하	500만원																		
4천만원~1억원	300만원																		
1억원 초과	200만원																		
사업(근로)소득금액	공제 한도																		
4천만원 이하	600만원																		
4천만원~6천만원	500만원																		
6천만원~1억원	400만원																		
1억원 초과	200만원																		

<적용시기> 2025.1.1. 이후 납부하는 공제부금부터 적용

(9)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

(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)

<개정취지> 결혼 가구의 주택 마련 지원

종 전	개 정
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☐ (대상) 근로소득자*인 무주택 세대주 * 소득요건: 총급여액 7,000만원 이하 ☐ (소득공제) 납입액의 40%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(납입한도 연 300만원) ☐ (적용기한) 2025.12.31.	☐ 적용기한 확대 ☐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☐ (좌 동)
☐ 청년*우대형 주택청약종합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* 연령: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☐ (대상) 무주택 세대주 * 소득요건: 총급여액 3,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,600만원 이하 ☐ (비과세한도) 500만원 ☐ (적용기한) 2025.12.31.	☐ 적용대상 확대 ☐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☐ (좌 동)

<적용시기>

- ☐ (소득공제) 2025.1.1.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

(비 과 세) 2025.1.1. 이후 지급받는 이자소득분부터 적용

(10)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추징요건 등 완화

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6항, 제11항, 제13항)

<개정취지>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액 추징요건 등 합리화

종 전	개 정
☐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세액추징* 제외 사유 *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인출 또는 해지 시, 이자소득 비과세 금액 추징 ○ 저축자의 사망·해외이주 ○ 국민주택(85㎡ 이하) 당첨 ○ 천재지변, 저축자 퇴직, 사업장 폐업 등 (해지 6개월 이내) <추 가>	☐ 세액추징 제외사유 추가 ○ (좌 동) ○ 「주택법」에 따른 사업주체의 파산, 입주자 모집승인 취소, 사업주체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전당첨자 선정 취소 등
☐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액추징* 제외사유 *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, 납입금액 누계액의 6%를 계좌 해지 시 추징 ○ 저축자의 사망·해외이주 ○ 국민주택(85㎡ 이하) 당첨 ○ 천재지변, 저축자 퇴직, 사업장 폐업 등 (해지 6개월 이내) ○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전환가입하기 위해 해지 ○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전환가입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총 가입기간 5년 초과 후 폐지 <추 가>	☐ 세액추징 제외사유 추가 ○ (좌 동) ○ 「주택법」에 따른 사업주체의 파산, 입주자 모집승인 취소, 사업주체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전당첨자 선정 취소 등
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 중도 해지 사유 ○ 주택 당첨 ○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전환가입	☐ 중도해지 사유 추가 ○ (좌 동)

현행	개정안
<추가>	○ 천재지변, 저축자 퇴직, 사업장 폐업, 저축자의 상해·질병*,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·영업인허가취소·해산결의·파산선고(해지 6개월 이내) *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 필요 ○ 「주택법」에 따른 사업주체의 파산, 입주자 모집승인 취소, 사업주체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전당첨자 선정 취소 등

<적용시기> 2024.11.12.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

(11)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특례 적용기간 연장

(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제1항)

<개정이유>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

현행	개정안
☐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☐ (적용기한) 2024.12.31.까지 가입분	☐ 적용기한 연장 ☐ 2025.12.31.까지 가입분

(12) 혼인무효 시 혼인세액공제 가산세 및 이자상당액 등

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)

<개정취지> 결혼비용 지원 및 혼인세액공제 집행규정 마련

종 전	개 정
<신 설>	☐ 가산세 면제 범위 및 이자상당액 산정 ○ (가산세) 무효확인의 소 확정 후 3개월 내 신고시 무신고·과소신고 가산세,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○ (이자상당액) 50만원 × ❶ × ❷ ❶ 종합소득산출세액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수정 신고등을 한 날까지의 기간 ❷ 「국기법 시행령」에 따른 이자율(1일 0.022%)
<신 설>	☐ 세액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및 신청절차 ○ (제출서류) 혼인관계증명서 ○ (신청절차) ❶ 과세표준확정신고 시에는 제출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 ❷ 근로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되는 사업 소득이 있는 자는 제출서류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

<적용시기> 2025.1.1.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

(13) 수영장·체력단련장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

(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)

<개정취지> 서민·중산층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 완화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		
□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○ (공제대상) 총급여의 25% 초과 사용금액 ○ (기본공제) － (공제율) 결제수단별 차등 <table> <tr> <th>구분</th><th>공제율</th></tr> <tr> <td>① 신용카드</td><td>15%</td></tr> <tr> <td>② 현금영수증·체크카드</td><td>30%</td></tr> </table> － (공제한도) • (7천만원 이하) 300만원 • (7천만원 초과) 250만원 ○ (추가공제) － (공제율) <table> <tr> <th>항목</th><th>공제율</th></tr> <tr> <td>① 전통시장·대중교통</td><td>40%</td></tr> <tr> <td>② 도서·공연·박물관·미술관·영화관람료*</td><td>30%</td></tr> </table> <추가> * 총급여 7,000만원 이하만 적용 － (공제한도) • (7천만원 이하) 300만원 • (7천만원 초과) 200만원 ○ (적용기한) 2025.12.31	구분	공제율	① 신용카드	15%	② 현금영수증·체크카드	30%	항목	공제율	① 전통시장·대중교통	40%	② 도서·공연·박물관·미술관·영화관람료*	30%	□ 추가공제 적용대상 확대 ○ (좌동) ○ 추가공제 항목 추가 － (공제율) <table> <tr> <th>항목</th><th>공제율</th></tr> <tr> <td>① 전통시장·대중교통</td><td>40%</td></tr> <tr> <td>② 도서·공연·박물관·미술관·영화관람료*</td><td>30%</td></tr> </table> － 수영장·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* * 총급여 7,000만원 이하만 적용 － (좌동) ○ (좌동)	항목	공제율	① 전통시장·대중교통	40%	② 도서·공연·박물관·미술관·영화관람료*	30%
구분	공제율																		
① 신용카드	15%																		
② 현금영수증·체크카드	30%																		
항목	공제율																		
① 전통시장·대중교통	40%																		
② 도서·공연·박물관·미술관·영화관람료*	30%																		
항목	공제율																		
① 전통시장·대중교통	40%																		
② 도서·공연·박물관·미술관·영화관람료*	30%																		

<적용시기> 2025.7.1. 이후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 분부터 적용

(14) 수영장·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구체화

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,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)

<개정취지> 서민·중산층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 완화

종 전	개 정
<신 설>	☐ 체육시설이용료 신용카드등소득공제 대상시설 및 대상금액 계산 기준 신설 ☐ (대상시설) 수영장, 체력단련장 *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1 ☐ (공제대상)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- 운동 강습비 및 회원권 비용 등 시설 이용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 제외 ☐ (계산기준) 시설이용료과 시설이용외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공제대상 금액 계산 기준 - 전체 금액의 50%를 체육시설이용분으로 계산

<적용시기> 2025.7.1.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